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8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9.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의원)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법률상 무자격자인 대행업체를 통한 입영 신청 대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3조를 일부 수정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병주)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 시 문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을 대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